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 6. 9.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윤 홍 창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7년 5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6월 1일

3. 제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학생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활동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과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3조의 교육감 책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인성 교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출 근거의 제도화를 통하여, 인성교육활동 활성화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